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52353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9. 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13,214,15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214,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

- 1) 원고는 2018. 9. 27. 소외 D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18. 11. 14.경 C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2) 원고는 C에 대하여 '14,226,255원 및 그중 원금 13,214,155원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처분

- 1) C은 피고의 동생으로 1999. 12.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5 지분에 관하여 1994. 4.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을 소유하였다.
- 2) C은 2019. 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E카드, F카드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 1)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의 가액은 23,209,750원¹⁾이다.
- 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는 후인 2019. 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를 G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을 누나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인 원고 등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2019. 2. 1.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9. 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를 G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 자체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의 원상회복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액배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이 23,209,7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원금 13,214,155원만을 구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는 포기하고 있으므로, 그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13,214,155원을 한도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3,214,1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3,214,15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214,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영

1) 공시지가로 계산함